신청번호

지역보험료·소득월액보험료
소득 정산부과 동의서

※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, 음영 표시된 칸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.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정산
대상자</td><td>성명</td><td></td><td>주민등록번호
(외국인등록번호)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증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(휴대)전화번호</td><td></td><td>결과 회신
방법</td><td colspan="4">□ 알림톡 □ 문자(SMS) □우편
※ 미선택 또는 중복선택 시 알림톡으로 전송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대리인</td><td colspan="7">※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내방 시에만 가능
※ 위임장, 위임자(신청인)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 제출 필수</td></tr>
<tr><td>성명</td><td></td><td>주민등록번호
(외국인등록번호)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rowspan="2">위임 서류
제출 여부</td><td rowspan="2">Y / N</td></tr>
<tr><td>(휴대)전화번호</td><td></td><td>신청인 관계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정산
및
조정
신청</td><td>휴·폐업,
퇴직(해촉)
사업장 명칭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조정신청
사유</td><td colspan="3">□ 폐업 □ 휴업
□ 퇴직(해촉) □ 소득감소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정산 및 조정
적용 기간
☑
(2개 연도 신청 시
모두 체크)</td><td colspan="2">정산 대상 국세청 소득
(사업·근로소득 합산)</td><td>정산 예정 시기</td><td colspan="3">조정 기간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□ 2023년 발생소득
(2023년 1~12월분 보험료 정산)</td><td>2024년 11월</td><td colspan="3" rowspan="2">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~ 그해 12월까지
※ 매달 1일 및 11~12월 신청 시
당월부터 적용가능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□ 2022년 발생소득
(2022년 9~12월분 보험료 정산)
※자격 취득·변동의 경우에 해당하며,
지사 또는 고객센터 상담 이후 선택 가능</td><td>2023년 11월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※ (제출서류) 폐업사실증명, 휴업사실증명, 퇴직(해촉)증명서, 소득금액증명 등
* 팩스·우편 신청 시 신분증 앞면 사본 제출 필수, 공단 전산 확인가능 시 서류 제출 불필요
※ (취소기간) 신청일+90일 이내 취소 가능, 정산 실시 이후에는 취소 신청 불가</td></tr>
</table>

안내사항

1. 소득을 조정 신청하실 경우 소득 부과 보험료를 우선 조정하고, 그 해의 확정소득이 다음해 11월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.
   ※ 조정 받은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, 조정 적용 연도 전체기간(1~12월분) 보험료를 정산함
   ※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한 가지로 조정 받더라도 사업소득⊕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정산
2. 공단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의2에 따라 소득정산 업무를 수행하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보험료 조정 이후 조정 적용 연도의 국세청 확정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산 부과되며,
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청한 경우 취득 취소, 보험료 경감을 받은 경우 소급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이에 동의합니다.□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의2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2023 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신청번호

지역보험료·소득월액보험료
소득 정산부과 동의서

※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, 음영 표시된 칸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.**(작성예시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.)**

정산 대상자 ①	성명	***김건강***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***111111-2222222***	증번호	***000000000***
	(휴대)전화번호	***010-0000-0000***	결과 회신 방법	☑ 알림톡 □ 문자(SMS) □우편 ※ 미선택 또는 중복선택 시 알림톡으로 전송		
대리인	※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내방 시에만 가능 ※ 위임장, 위임자(신청인)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 제출 필수				**(대리인 신청 시 작성)**	
	성명	***김강이***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***333333-444444***	위임 서류 제출 여부	Y / N
	(휴대)전화번호	***010-0000-0000***	신청인 관계	***배우자***		

정산 및 조정 신청 ②	휴·폐업, 퇴직(해촉) 사업장 명칭	***○○주식회사***	조정신청 사유	□ 폐업 □ 휴업 ☑ 퇴직(해촉) □ 소득감소
	정산 및 조정 적용 기간 ☑ **(2개 연도 신청 시 모두 체크)**	정산 대상 국세청 소득 (사업·근로소득 합산)	정산 예정 시기	조정 기간
		☑ 2023년 발생소득 (2023년 1~12월분 보험료 정산)	2024년 11월	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~ 그해 12월까지
		□ 2022년 발생소득 (2022년 9~12월분 보험료 정산) ※자격 취득·변동의 경우에 해당하며, 지사 또는 고객센터 상담 이후 선택 가능	2023년 11월	※ 매달 1일 및 11~12월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가능
		※ (제출서류) 폐업사실증명, 휴업사실증명, 퇴직(해촉)증명서, 소득금액증명 등 *** 팩스·우편 신청 시 신분증 앞면 사본 제출 필수, 공단 전산 확인가능 시 서류 제출 불필요** ※ (취소기간) 신청일+90일 이내 취소 가능, 정산 실시 이후에는 취소 신청 불가		

안내사항

1. 소득을 조정 신청하실 경우 소득 부과 보험료를 우선 조정하고, 그 해의 확정소득이 다음해 11월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.
   ※ 조정 받은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, 조정 적용 연도 전체기간(1~12월분) 보험료를 정산함
   ※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한 가지로 조정 받더라도 사업소득⊕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정산
2. 공단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의2에 따라 소득정산 업무를 수행하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보험료 조정 이후 조정 적용 연도의 국세청 확정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산 부과되며,
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청한 경우 취득 취소, 보험료 경감을 받은 경우 소급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이에 동의합니다.☑

③ (체크 누락 시 조정 신청 불가)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의2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④ 2023 년 *00* 월 *00* 일

김건강

⑤ 신청인 *김건강*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*김강이* (서명 또는 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